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튼튼한 국민건강보험.

2025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 목 차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1장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I. 배경 및 목적	1
II. 사업 주요내용	2

제2장 시범사업 서비스 운영 매뉴얼

I. 시설 및 인력	5
II. 서비스 제공 기준	6
III. 서비스 제공 기록	8
IV. 서비스 계약 등	9
V. 서비스 비용 산정 및 청구·지급	10
VI. 시범사업 참여 중단	12
VII. 참여기관 준수사항	12

제3장 시범사업 전산 매뉴얼

I.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14
II. 종사자 관리	17
III. 청구	18
IV. 청구 관리	21

< 목 차 >

제4장 가족휴가제 개요

I. 배경 및 목적	24
II. 서비스 주요 내용	25
III. 계약 전 확인 사항 등	27
IV.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28
V.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31
VI. 청구	34

제5장 시범사업 관련 서식 [1~13] 35

제6장 시범사업 Q&A 56

제1장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요약) 2025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 '25년 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25년 신규 참여기관은 6월부터~)
참여기관	· 기준 1~6 중 1가지 이상 충족한 주·야간보호기관 (공 통) ㉠정원 30인 이상 ㉡침실보유 ㉢인력추가배치(요양보호사) 가산기관 (기준1)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연장 참여 희망기관 (기준2)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립기관 (기준3) 공통요건을 충족한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단기보호와 병설기관 (기준4)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직전 기관평가 결과 A, B 기관 (기준5) 공통요건을 충족, 지정 후 1년 이상 운영기관(평가결과 없는 기관) (기준6) 기타 선정위원회가 공공영역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대상자	·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가족휴가제 이용 시에만 대상)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1일 4~8명 (정원/이용인원) 30인~39인: 4명, 40인~49인: 6명, 50인 이상: 8명 ※ 실제 이용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침실 보유 규모에 따라 다름
서비스 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가족휴가제) 연 11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대상) 현행 2025년 고시 기준 1~2등급 전체수급자,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중 가족 휴가제 이용가능 수급자 · (인력기준) 야간서비스 시간(22시~다음날08시) 요양보호사 등 1명 의무 배치 단, 층을 달리하는 서비스하는 경우 각층별로 요양보호사 배치 ·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별도의 침실 보유 ※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욕구를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서비스 비용	·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포함)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통합) (주·야간서비스비용) 등급별 주·야간보호 최대 13시간 초과 비용 산정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64,000원 산정 ※ (운영지원금) 야간운영비용 통합지급, 5일 일수 제한 삭제(2023년)
시범사업 평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평가 및 분석 - 시범사업 기본방향, 대상자·시설·인력 기준, 서비스 비용 등 - 단기보호 인프라 확보 현황, 이용실적, 가족 부양부담 감소 등
시범사업 지원	· 참여기관 현장지원 및 확인, 기관 간담회, 만족도 조사, 홍보 등

I

배경 및 목적

① 배경

- 단기보호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기관수*는 매년 줄고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
 - ※ 단기보호기관 현황(개소): ('17) 218 → ('19) 162 → ('20) 150 → ('21) 120 → ('22) 110 → ('23) 113 → ('24) 102
-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재가급여의 기능 강화 필요

② 목적

- 단기보호기관의 지속적 감소로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주·야간보호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모형' 개발 필요
- 단기보호급여 이용을 통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③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세부추진 과제('23.9월)

※ 1-(1)-③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1.12.9.)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계획 안내

II

사업 주요내용

1 추진방향

- 재가급여 복합운영(주·야간보호+방문요양) 기관에서 시범사업 운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수가 개발

2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모형개발, 참여기관 공모·선정,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서비스비용 지급, 홍보, 현장지원·점검 등 사업운영 총괄
- (참여기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서비스비용 청구, 현장의견 제시 등

3 사업모형

- (사업명) 2025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5년 1월 1일 ~ 별도 통보 시까지 (신규 참여기관은 6월부터 ~)
- (참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약 380개소

■ 참여기준 ■

(공통)

㉠정원 30인 이상

㉡침실보유

㉢인력추가배치(요양보호사) 가산기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제 이용 시 대상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가족휴가제) 연 11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단기보호 이용일(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 (서비스 이용인원) 주·야간보호 정원 규모별 1일 최대 이용가능인원 4~8명

구분	주·야간보호기관 정원		
	30인 ~ 39인	40인 ~ 49인	50인 이상
이용가능인원	4	6	8

※ 실제 이용은 참여기관의 침실보유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시설기준)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 (인력기준) 수급자 케어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야간(22시~다음날08시)에 요양보호사 등 1명 의무 배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기준 준수

※ 단, 층을 달리하여 서비스하는 경우 각층별로 요양보호사 배치, 야간운영비용은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배치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함

※ 부득이한 경우, 요양보호사+간호인력 추가배치가산을 모두 받는 기관은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

- (서비스내용)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서비스비용) 주·야간서비스비용 + 야간운영비용(운영지원금 통합)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주·야간서비스비용 및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발생
- (비급여 항목) 주·야간서비스 내용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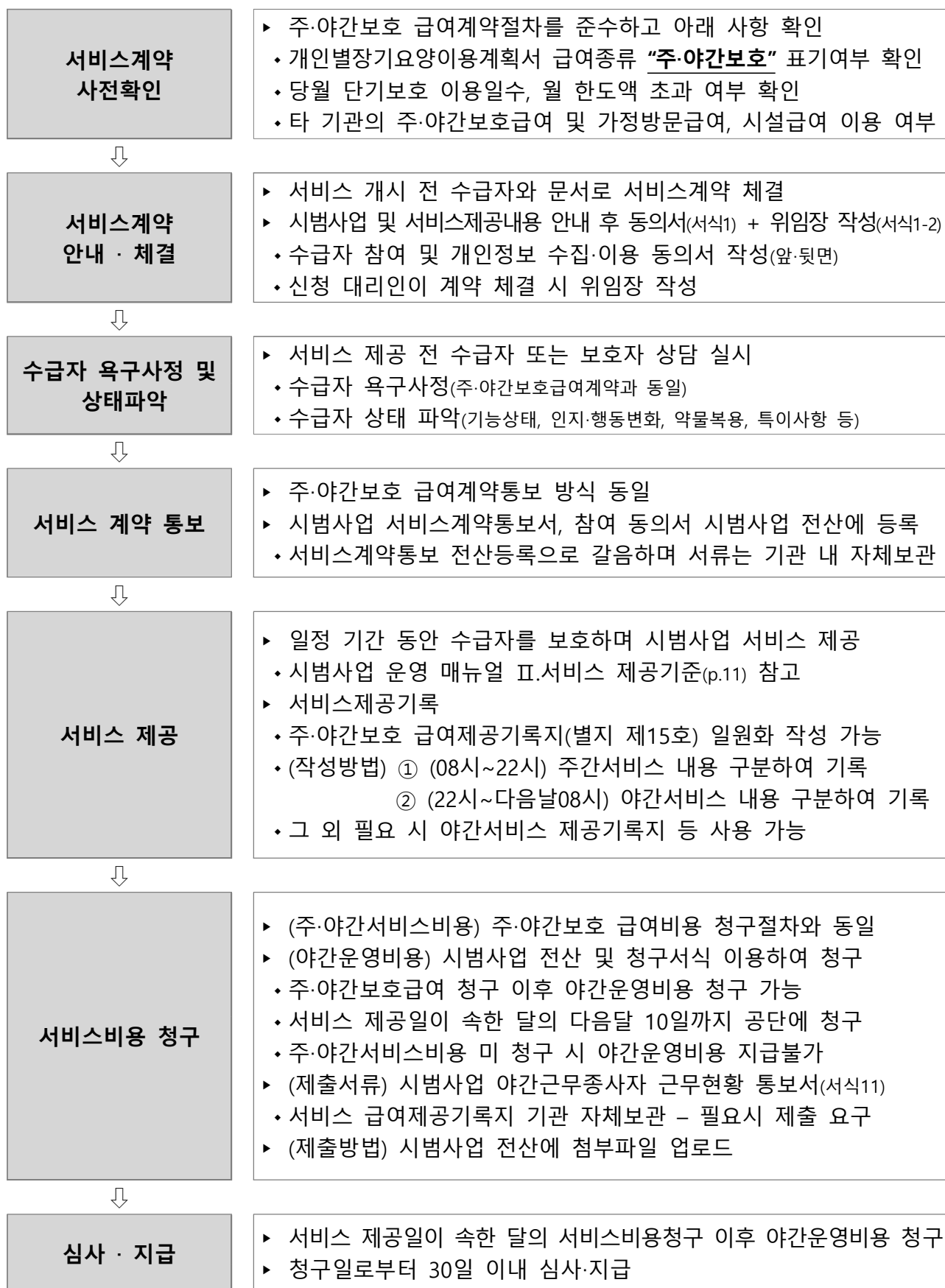
4 시범사업 평가 및 분석

-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관 수, 기관별 서비스 제공건수 등 추이 분석
- (이용실적) 총 이용자, 1인당 총 이용기간, 1인당 평균이용건수, 최초 이용자 수, 서비스 재 이용률, 만족도 등 이용현황 분석
- (시설기준) 단기보호 시설(침실) 기준 적용에 대한 적정 평가
- (인력기준) 야간근무 인력(요양보호사 등)의 운영형태(교대 및 전담), 제공인력 자격 및 기준 적용에 대한 적정 평가
- (운영비용 분석) 보험자, 이용자, 운영자 측면의 서비스 비용 및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관리운영비용을 분석

제2장

시범사업 서비스 운영 매뉴얼

< 시범사업 업무 흐름도 >



I

시설 및 인력

① 시설기준

- (침실) 주·야간보호기관의 지정·설치기준을 준수하되, 야간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리된 공간** 침실*로 사용

* 현행 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적용한 침실 보유

※ 다만, 타 공간과 병용할 경우 주간서비스 운영시간에는 지정·설치기준에 따라 각 공간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야간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 가능

- (이용 가능 인원) 정원, 침실 규모,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사전 통보

- (이용 가능 인원 변경) 침실 규모 및 시설 환경 변화로 서비스 이용 가능 인원을 변경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신고서 (서식8)를 작성하여 사업부서로 제출

※ 첨부서류 : 변경 전·후 평면도, 변경 후 침실 및 화장실 등의 사진 첨부

② 인력배치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주·야간보호기관의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의무배치)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수급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보호사 등 1인 의무 배치

* (기본원칙) 서비스 제공 월에 **인력추가배치가산(요양보호사)**을 받은 경우에 한해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가능

※ 야간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22시~다음날08시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공동 활용 가능

※ 요양보호사를 야간에 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호인력 추가 배치가를 받고 있는 기관에 한하여 야간에 간호(조무)사 배치 가능(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II

서비스 제공 기준

① 이용일수 및 서비스 비용 산정을 위한 기준

- (1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

* 단기보호의 “일” 개념인 고시 제38조제1항을 준용함
 ⇒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 (서비스 비용) 일 단위로 산정하고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 야간운영비용으로 구분
 - (주·야간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18시~22시 야간가산 포함)
-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08시) 운영 시 기관 1회당 1일 64,000원 산정

※ (기존 운영지원금) 야간운영비용 통합지급, 5일 일수 제한 삭제(2023년)

② 입소자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 가족휴가제 이용 시만 가능
 - ** 통합재가 예비사업 II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동시 참여한 기관은 기초생활, 가족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이용 수급자만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가능
- (입소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되, 각 기관의 침실 보유 규모에 따라 1일 이용인원 결정(선정결과 통보 시 사전 안내)
 - (월별 입소자 수)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시범사업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③ 서비스 제공기준

- (이용일수) 월 9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가족휴가제) 연 11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입·퇴소일 포함)과 합산 적용하되, 시범사업 이용 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은 불인정
- (월 한도액) 법령에서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야간운영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2025년 고시 기준 ■

- 예시①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시범사업 이용일 포함)가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1~2등급은 월 한도액 10%, 3~5등급은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 가족방문요양 이용 대상자 제외
- 예시②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일수(시범사업 이용일 포함)가 월 15일(1일 8시간 이상)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 추가

- (프로그램 제공) 주·야간서비스 제공 시 수급자의 등급 및 욕구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기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제공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외박 불인정)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중 수급자 사정으로 외박 사유 발생하더라도 외박 불인정, 외박 시 퇴소 처리
- (서비스 이용 제한)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방문요양 등 이용자는 동일 날에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가능하나, 수급자 상태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17시 이전 입소**

- (그 외 사항)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은 본 매뉴얼에 따르며,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고시에 따름

4 서비스 제공 내용

-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 제공
- 1~4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
-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필수 제공**

III

서비스 제공 기록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록지 작성(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08시~22시) 주간서비스 시간 구분하여 급여제공 기록
 - (22시~다음날08시) 야간서비스 시간 구분하여 급여제공 기록
 - 특이사항* 반드시 기재하여 인수인계
 - * 보호자 요청으로 단기보호 서비스, 가족휴가제 제공, 수면·식사패턴, 생활양식 등
 - 그 외 필요 시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5) 등 활용 가능
-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
 - (제공주기) 월 1회 이상 제공(해당 월의 시범사업 서비스 종료된 때 제공)
 - (제공방법) 수급자(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 모바일 등 전자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인정

IV

서비스 계약 등

① 사전확인

- (확인사항) 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표기여부
 - 당월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수, 월 한도액 초과 여부
 - ※ 2023년 고시에 따라 가족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월 한도액 120% 증액 미포함 주의
 - ※ 2025년 고시에 따라 1~2등급은 15일 이용시 월 한도액의 110%만 추가 산정됨.
 - 서비스 계약 중복 확인을 위해 타 기관의 주·야간보호 및 가정 방문급여,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상담 및 욕구조사) 기관은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야간시간대 가정 내 특이사항 파악
 - 야간시간대의 필수 인수인계 사항(수면·식사패턴, 생활양식 등)은 서비스제공기록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 ‘**특이사항**’에 반드시 작성하여 야간근무자는 이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계약

- (시범사업 안내 및 참여 동의 등)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안내와 참여 동의여부 확인하여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위임장*(서식1-2)을 받음
 - * 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징구
- (서비스 계약 등)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보호자)와 주·야간 보호급여 및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을 각각 문서로 체결하고, 이 경우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고 1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보관

- (서비스 계약내용 통보·변경 등)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시범사업 전산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

※ (전산경로) 기타 >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이용자 관리]

※ 시범사업 전산에 **이용자 기본정보 및 이용일** 등록하여 서비스 계약통보

- 사전에 서비스 계약통보 없이 야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시범사업 이용자로 인정하지 않음(고시 제30조2에 따름)

- (서비스 제공기록지) 기관은 야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주간보호 서비스의 제공기록지와 시범사업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를 **병용해서 사용 가능함.**

- 기록지(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작성 시 '**특이사항**'에 반드시 **수면패턴과 생활방식**을 자세하게 작성할 것.

V

서비스 비용 산정 및 청구 · 지급

① 서비스 비용 산정

주·야간서비스비용(야간가산 포함) + 야간운영비용(64,000원)

- (주·야간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야간운영비용)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 운영 시 기관 1일당 64,000원 산정

■야간운영비용 산정시 예외 사항■

- ◆ 단, 수급자 사정(수급자 입원, 사망, 서비스 거부)으로 22시~다음날 08시 사이 서비스 제공 중단된 경우
 - (야간운영비용) 100% 산정
 - (근무시간)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② 본인부담 비용

- (주·야간서비스비용) 법 제40조에 따라 산정
- (비급여 항목) 수급자 전액 부담
- (야간운영비용)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③ 청구방법

- (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절차*에 따름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참고
 -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 시 특정내용 등록에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숙박제공」으로 등록(기타 사유로 입력 시 「심사불능」으로 유의바람)
 - ※ '23년 고시 기준 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변경 13시간 초과 등록 시 특정내용 등록 화면생성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으로 직접입력
- (야간운영비용) 서비스 제공일이 속한 달의 급여비용 청구, 이후 야간운영비용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지급
- (청구서 접수 등) 사업부서는 제출서류를 전산으로 접수하고, 참여 기관에서는 전산으로 진행상태 확인
- (현황통보서 제출)
 - 기관기호 등 현황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참여기관 현황 (변경)통보서 등을 사업부서로 제출

④ 심사 및 지급

- 심사근거
 - (주·야간서비스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야간운영비용)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심사·지급 절차
 - (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심사·지급 절차에 따름

- (야간운영비용) 청구 접수 내역과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 (서식11) 등을 대조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사·지급

○ 심사지급통보

- 심사결정 후 사업부서는 해당 기관에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산으로 교부

○ 지급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당월 급여비용은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서비스비용 청구 후 야간운영비용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지급

VI

시범사업 참여 중단

- (참여기관)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중단 사유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 종결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부서에 제출
- (이용자) 이용자 서비스 중단 시, 기관은 서비스 계약통보서에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범사업 전산을 이용하여 통보

VII

참여기관 준수사항

1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종사자가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 전원에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 기가입 상품이 주·야간보호기관 표준급여제공시간(08시~22시) 이외 시간까지 적용가능한지 여부 확인

② 급식 제공

- (급식위생관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2.급식위생관리 기준 준수
- (급식 위탁 등) 「2024년 노인보전복지 사업안내」 7-3-Ⅲ.주야간보호 서비스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

③ 안전관리

- (야간근무직원 교육 등) 참여기관은 서비스 제공 전 야간직원에게 수급자의 상태, 야간서비스 제공방법 및 안전수칙,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등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야간근무 직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내용을 숙지
- (서비스제공 환경) 수급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침실 (병용공간을 활용한 침실 포함) 등 생활공간의 기구·장비 등을 정리하고, 실내 적정 조도(침실 및 생활실, 화장실 등의 간접등,센서등 설치 등)·온도·습도 등을 유지
- (낙상예방 등) 생활공간 정리, 안전손잡이·침대 사이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 장치 등 낙상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침대 사이드 레일 미설치 사례 ■



-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대응절차, 응급 조치방법 등에 대한 지침 마련

④ 참여기관 협조사항

- (자료 제출 등) 기관은 시범사업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수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제출
- (기록·보관 등) 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을 작성서식 기준으로 작성, 원본은 기관에서 서비스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

제3장

시범사업 전산 매뉴얼

I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
- 화면용도 시범사업 계약 내용을 등록하여 이용현황 조회 및 서비스 계약통보



1 이용자 관리

- [이용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야간서비스 이용자 등록] 화면에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및 서비스 계약 내용 등록
 - 서비스 이용일, 시간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수정 입력
- 수급자 신청: [이용자관리]에 등록된 월별 이용 현황 조회
- 수급자 현황: [이용자관리]에 등록된 이용일자별 세부현황 조회



- ① [이용자관리] 버튼 클릭하면 [야간서비스 이용자 등록] 화면 팝업
- ② [서비스제공년월] 설정 후 조회 클릭, 해당 월에 유효한 주·야간보호 계약자 조회

- ③ 계약내용에 조회되는 대상자 중 야간서비스 이용 대상 클릭
- ④ 대상자 클릭하면 “장기요양대상자”에 계약자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
 - 주·야간보호 계약이 없으면 계약내용에 대상자가 조회되지 않음

- ⑤ [야간서비스 기본 정보] 입력
 - [야간서비스 이용내용] 전산 자동구현
 - 계약 시 보호자(수급자)에게 확인하여 중복 계약 사전방지
 - [동의서 작성] 서비스 계약 시 작성한 [서식1]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내용 입력
 - 월별 입력되는 화면으로 서비스 제공년월이 달라지면 재입력
- ⑥ [야간서비스 이용일] 입력
 - 입소시간, 퇴소시간, 이용사유 입력
 - 입·퇴소시간은 실제 주·야간보호 서비스시간(가감산 내역)과 동일하게 입력
 - 이용사유는 이용일별 설정 가능, 사유는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타 사유는 텍스트 입력

1)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2) 집안경조사, 3) 보호자의 휴식, 4) 집수리, 이사 등 주거문제, 5) 요양시설 입소 전 적응, 6)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7) 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8) 기타, 9) 가족휴가제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원청구 시 특정내용을 위의 사유로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 이용일 클릭하면 해당 일에 입력내용 등록, 저장 버튼 클릭
- 일정 삭제 시 입력된 이용일 다시 클릭 후 저장

야간서비스 기본 정보 야간서비스 이용일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 0 타기관 시범사업 이용일수 0 타기관 단기보호 급여 이용일수 0

입퇴소내역/시간 [최종저장일시 : 2023-12-29]

입소시간 00시 00분 퇴소시간 24시 00분 이용사유

실제 주야간보호 급여 시간과 동일하게 입력

1:보호자의 병원 입원 치료
2:집안결조사
3:보호자의 휴식
4:집수리, 미사증 주거문제
5:요양시설 입소전 적응
6: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7:보호자의 여행, 외출 등
8:기타
9:가족휴가제

이용사유는 1~9번 사유 중 하나 선택

단독 1일 서비스 발생

⑦ 전월·익월 연계 서비스 입력

- 월초·월말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시 단독1일 서비스 발생사유 입력
- 시범사업은 최소1박2일 서비스 제공되나, 부득이하게 사망, 입원, 서비스거부 등 1일 단독 이용사례 발생 시 위와 동일하게 특이사항 등록

서비스 등록 사유[npr1104p02]

* 특이사항 등록

NO	서비스 제공일자	서비스제공 시작시간	서비스제공 종료시간	작성사유
1	2021-05-01	0000	1800	사망 입원 서비스거부 전월연계 익월연계

확인 취소

② 서비스 계약 통보

- [이용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야간서비스 이용자 등록] 화면에 서비스 계약내용 등록
- 내용입력 후 저장하면 공단으로 즉시 전송되어 서비스 계약통보 완료
- 야간운영비용 청구 시 반영되는 자료로 취소·변경사항 발생하면 지체 없이 수정 입력하여 통보

II

종사자 관리

■ 단기보호 종사자 근무시간 조회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종사자 근무시간 조회
- 화면용도 근무내용 신고내역을 연계하여 야간서비스 종사자와 근무시간을 조회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 시 기관에서 입력한 근무내용신고 값을 자동으로 연계, 조회
 - 단순 조회만 가능한 화면으로 입력 및 수정 불가
 - 입력 오류 건은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화면에서 수정, 결정요청
- 22:00~다음날08:00 근무시간 등록된 요양보호사·간호인력 모두 조회

단기보호 종사자 근무시간 조회 rpt1 (5m)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

서비스제공월: 2020-12 ~ 2021-02

종사자 근무내역

근무시간표: 18:00~24:00 00:00~08:00 가 포함된 간호인력, 요양보호사만 조회됩니다

번호	대상연월	성별	생년월일	직종	근무일	근무시작1	근무종료1	주간재외1	야간재외1	근무시작2	근무종료2	주간재외2	야간재외2	주간실근무
1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03	20:00	24:00	0	0	0	0	120
2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04	00:00	08:00	0	0	20:00	24:00	240
3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05	00:00	08:00	0	0	0	0	120
4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10	20:00	24:00	0	0	0	0	120
5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11	00:00	08:00	0	0	20:00	24:00	240
6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12	00:00	08:00	0	0	0	0	120
7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17	20:00	24:00	0	0	0	0	120
8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18	00:00	08:00	0	0	20:00	24:00	240
9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19	00:00	08:00	0	0	0	0	120
10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24	20:00	24:00	0	0	0	0	120
11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25	00:00	08:00	0	0	20:00	24:00	240
12	2020-12	남	1보	5	5	11.요양보호사 1급	26	00:00	08:00	0	0	0	0	120

III

청구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화면용도 서비스 제공월별 이용현황을 조회,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청구



1 청구

○ 야간운영현황 : 서비스 계약통보된 자료 반영

① [서비스제공월] 설정 후 조회 클릭

② [야간운영현황]-[수급자 신청]-[수급자 청구] 화면 각각 조회, 청구할 이용자, 이용일, 야간서비스 시작·종료시간 등 확인



- ④ 청구 과정 중 해당 건에 대해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접수신청 전 [청구 처리 비고]에 텍스트 입력
- ⑤ [심사결정액]은 공단심사 완료 후 조회되는 자료, 기관에서 입력 불가
- ⑥ [첨부파일]클릭하여 [서식11]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를 첨부하여 저장 ... 첨부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청구접수 불가
- ⑦ [접수신청] 클릭하여 작성자 입력, 청구서 접수

/2025.01.31 13:05/180193/***.***.23.43

② 청구취소 · 반려

○ 청구취소 : 접수신청 후 오류 발견하여 수정하는 경우

① [접수취소] 버튼 클릭하여 청구 취소

②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화면으로 이동, 서비스 계약내용을 등록하는 [이용자관리] 클릭

③ [서비스 제공 년 월] 입력 후 조회 접수취소 건 확인

④ [취소 재사용]버튼 클릭하여 재사용 확인

⑤ 내용 수정 후 청구 매뉴얼(p.19)에 따라 청구 진행

★ 청구취소·반려 시 반드시 [취소 재사용] 버튼 클릭한 뒤 내용 수정,
클릭하지 않으면 청구화면 비활성화로 청구접수 불가 ★

○ 청구반려 : 기관이 청구 접수신청 하였으나, 심사가 불가하여 공단 심사자가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청구 전 상태로 복귀시켜 놓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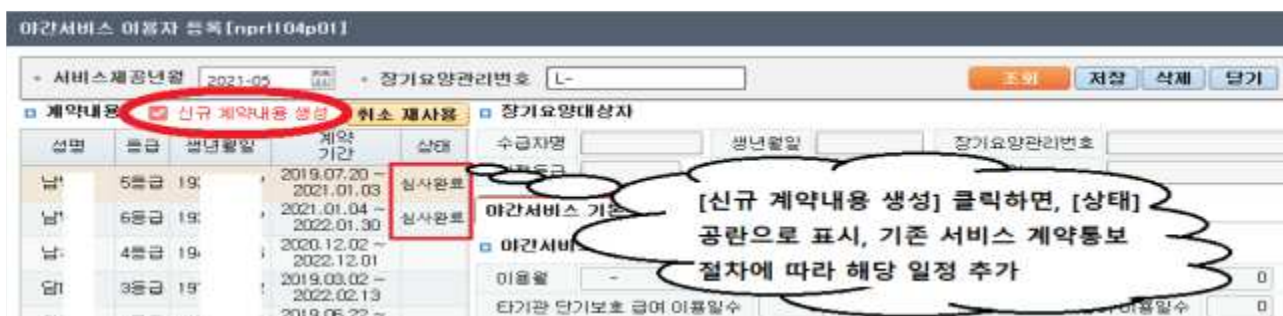
①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화면으로 이동, [청구월], [구분]-“반려”값 입력 후 조회

② 반려사유 확인 후,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이용자 관리]-[서비스 제공 년 월] 입력-[취소 재사용]버튼 클릭

③ 내용 수정 후 청구매뉴얼(p.19)에 따라 청구 진행

③ 청구누락

- 심사완료 후 누락된 이용자 및 일정을 추가 청구하는 경우
 - ① [단기보호 시범사업 현황조회]-[이용자 관리]-[서비스제공년월]입력
-[신규 계약내용 생성]버튼 클릭하여 입력 활성화
 - ② 서비스 계약통보 절차에 따라 누락된 일정 추가 후 청구 진행



IV

청구 관리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 화면용도 청구 내용의 상태 및 결과 조회



- 청구 : 기관이 제출한 청구내용을 공단에서 접수한 상태
- 심사 : 접수된 청구내용을 공단 심사자가 심사 중인 상태
- 심사완료 : 심사자가 청구내용 심사완료 후 지급비용 안내한 상태

- 지급의뢰 : 심사 완료되어 급여비 지급통장으로 지급의뢰 된 상태
- 지급완료 : 급여비 지급통장으로 지급완료 된 상태
- 반려 : 기관이 청구 접수신청 하였으나, 심사가 불가하여 공단 심사자가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청구 전 상태로 복귀한 상태
- [청구 월]-[구분] 값 입력하여 청구 진행상태 및 결과를 확인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현황 npr107m01 기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 엑셀 달기

청구월 2021-05 ~ 2021-05 구분 전체(반려 제외) 청구번호 조회

청구 현황 야간운영현황 야간운영비용 종사자조회 청구

NO	서비스 이용년월	접수번호	청구상태	결정일자	청구건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	
						건수	심사금액	청구건수	청구금액		
					청구건						
					심사						
					심사완료						
					반려						

제4장

가족휴가제 개요

I

배경 및 목적

① 배경

- 재가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추진 중 시범사업 이용자 40%가 이용일수 확대 희망
-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이 매년 감소하여 보호자 및 수급자 불편 초래

②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가족휴가제(중증, 치매) 적용을 통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재가생활 유지 및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③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①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4.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1.12.9.)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 3차 시범사업 연장계획 안내」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87('22.4.6.)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행정지침 송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094('22.7.18.)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기준 안내」

II

서비스 주요 내용

① 서비스 내용

- (내용)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간에서 고시 제36조2의 1항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제공 가능
- (적용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중증수급자,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제 이용가능 수급자
- (이용일수) 연간 11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서비스 제공 내용) 고시 제36조 제1항 및 2항 준용
- (서비스비용) 등급별 주·야간보호-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② 서비스 제공 기준

- (1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 ... 고시 제38조 제 1항 준용
- (서비스비용)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가족휴가제' 수가 적용하여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 산정
 - '주·야간보호-치매가족휴가제 수가' 신설 ... 고시 제 37조와 동일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동일 수가 적용
 - 급여비용 산정방법 ... 고시 제 36조의3 1항 단서, 제 38조 준용
 - 퇴소일은 등급별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입소자) 주·야간보호기관의 정원 내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의 단기보호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 내에서 이용 ...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과 합산
 - (월별 입소자 수)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가족휴가제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그 월의 급여제공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용일수) 연 11일 이내 이용 가능(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 타 기관 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입·퇴소일 포함), 종일방문요양 이용일과 합산 적용
- (퇴소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지급으로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반드시 필수 제공
 - ※ 다만, 오전 8시 퇴소자의 한해서는 프로그램 제공을 하지 못해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 (월 한도액) 월 한도액 제외 ... 고시 제36조의2 1항
 - 월 한도 미포함 금액이므로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월 한도액 추가산정 할 수 있는 이용일수에 미포함 ... *고시 제3장 제1절 제13조 제7항 및 8항
- (야간운영일)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가족휴가제 야간운영일 합산하여 월 단위로 기간 당 산정
 - ※ 같은 날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 가족휴가제 이용자에게 야간서비스(22시 ~ 다음날 08시)를 제공한 경우 야간운영일은 1일
- (급여비용 산정 세부사항) 동일부지 내 기관, 기관기호가 동일한 기관이 가족휴가제를 제공한 날 동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한 종류의 급여비용만 산정**
 - ※ 가족휴가제 제공일에는 목욕서비스가산, 이동서비스 산정 불가
-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산정
-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수급자 전액 본인 부담
- (그 외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 준용

III

계약 전 확인 사항 등

1 사전확인

▶ 기관은 서비스 계약체결 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의 내용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종류 “주·야간보호” 표기 여부
-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단기보호)” ○ 체크 여부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기준일: 2022.11.02)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	주 5 회(3등급, 8시간이상 10시간미만(1일당))	1,053,800 원	158,070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1,053,800 원	158,070 원
복지요구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0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0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단기보호)	0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종일 방문요양)
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 보호)	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	0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
X	방문간호(건강관리)	X	방문간호(치매관리, 60일 한정)		

○ 가족휴가제 연간 누적 이용 일수

※ 타 기관 이용 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

○ 기초·의료급여대상자 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여부

- 서비스 계약 중복 확인을 위해 타 기관의 주·야간보호 및 가정 방문급여,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상담 및 욕구조사) 기관은 서비스제공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하고 수급자 야간시간대 가정 내 특이사항 파악

-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24시 일과표(서식4)를 작성하여 보관 ... (외부 수급자) 주·야간서비스의 욕구조사 기록지 작성

② 서비스 제공 기록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및 제공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간보호) 작성 ...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 특이사항 기재, 제공주기 및 방법은 단기보호 시범사업 매뉴얼 준용

IV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

① 서비스 비용 산정

- 가족휴가제 비용
 -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미만' 또는 '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종료시간) 24:00
 - (중간일) 등급별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급여비용 산정
 - ※ (시작시간) 00:00 ~ (종료시간) 24:00
 - (퇴소일) 수급자 등급별,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 ...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미 산정

< 주야간보호 -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

등급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5,99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71,970
장기요양 2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3,32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6,640
장기요양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30,78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61,560
장기요양 4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9,97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9,940
장기요양 5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9,15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8,300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_12시간미만	29,15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58,300

- 야간운영비용: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일 준용

② 청구방법

- 가족휴가제 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절차*에 따름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참고

■ 서비스비용 청구 예시 ■

◆ 대상 및 제공기간 : 3등급 수급자, '24. 1. 11. 09:00 입소 ~ 1. 14. 18:00 퇴소 (3일 이용)

◆ 총 서비스 급여비용 : 445,200원

◎ 376,680원(가족휴가제 비용 + 야간운영비용) + 68,520원(주·야간보호비용)

- (1.11 : 입소일, 09:00 ~ 24:00) : 125,560원

▶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 61,560원

▶ 야간운영비용 : 64,000원

- (1.12 ~ 1.13 : 전일 서비스제공) : 251,120원

▶ (1.12~13) 3등급, 가족휴가_12시간이상 : 61,560원*2일=123,120원

▶ 야간운영비용(7.12~15) : 64,000원*2일=128,000원

- (1.14 : 퇴소일, 00:00 ~ 18:00) : 68,520원

▶ 3등급, 13시간 초과 주·야간보호비용 : 68,520원

◎ 가족휴가제 비용: 184,680원, 야간운영비용: 192,000원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 입·퇴소 내용신고

·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에 가족휴가제 가능여부 확인

· 입·퇴소 사유: '가족휴가제' 선택 후 입·퇴소 시간 입력

※ (퇴소일) 가족휴가제 선택 제외, 입·퇴소 시간 입력 → 이용일수 제외

- 종사자 근무내용신고: 실제 근무시간 입력(야간근무 시간 포함)

※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가산 기준금액에 포함 ... 고시 제52조

- 청구서 접수 등

- 참여기관에서는 전산으로 '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일수' 목록 확인 후 청구

-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서식 11) 첨부파일 등록

③ 심사 및 지급

○ 심사근거

- (가족휴가제·야간운영비용) 「본 매뉴얼」,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매뉴얼」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주·야간서비스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에서 정한 심사·지급 기준

○ 심사·지급 절차

- (야간운영비용) 청구 접수 내역과 야간근무 종사자 근무현황 통보서(서식11) 등을 대조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사·지급
- (가족휴가제·주·야간서비스비용) 현행 주·야간보호급여 심사·지급 절차에 따름

○ 심사지급통보

- 심사결정 후 사업부서는 해당 기관에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산으로 교부

○ 지급

- 시범사업 서비스 급여비용(원청구)은 다음달 10일까지 청구, 원청구 완료 후 야간운영비용 청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지급

V

시범사업 이용자 관리 및 서비스 계약 통보

1 급여계약내용 등록 입력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 접속경로 기관포털 > 급여계약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급여계약내용 등록(재가)
- 화면용도 가족휴가제 급여일정등록·변경 및 이용일수 확인

- 입력 버튼을 누르고 [급여일정등록] 화면에서 '가족휴가제' 목록 체크 후 시작·종료시간 입력
 - 시범사업 미 참여기관, 가족휴가제 이용자 아닌 경우 비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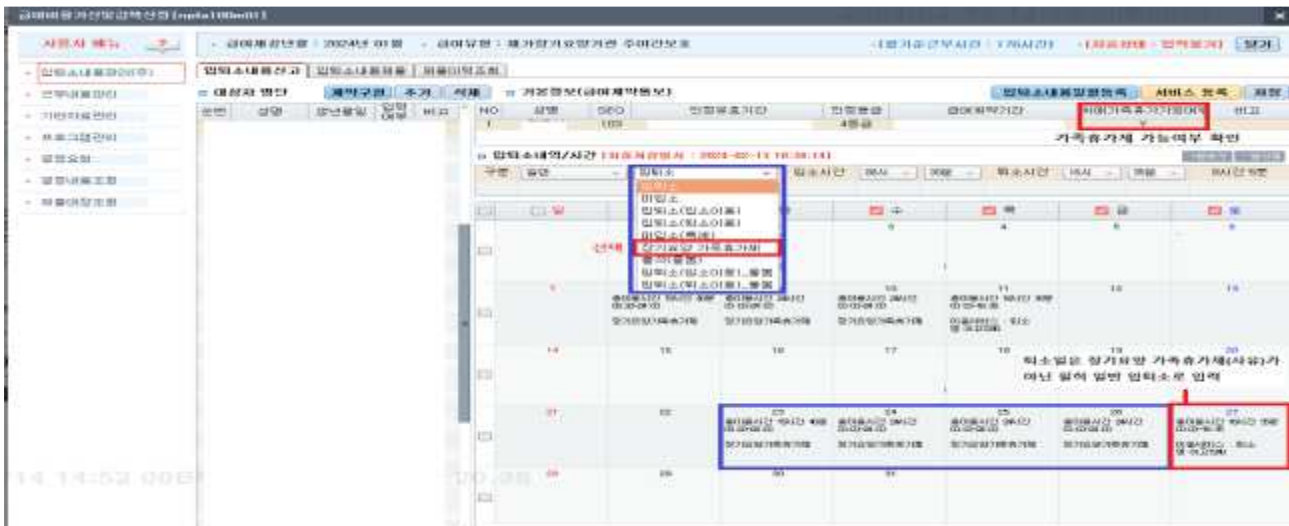
- 「팝업」 계약일정 등록 시 유의사항 팝업 확인

- 가족휴가제 선택 후 종료시간 24:00 입력 시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계산
 - (입소일·중간일)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산정
 - (퇴소일)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로 미 산정
- 타 기관 이용 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포함한 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일수 표시 ... 종일방문요양 1회 → 0.5
-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월 한도 미포함금액'에 표시
- 급여일정 등록 후 날짜 위 마우스 태그 시 해당 급여비용 구현
 - (입소일) 입소시간에 따라 '가족휴가_12시간이상' 또는 '가족휴가_12시간미만' 급여비용
 - (중간일) '가족휴가_12시간이상' 급여비용
 - (퇴소일) 퇴소시간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3 입·퇴소내용관리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산정

- 접속경로 가산 및 감액산정 > 수가가산 및 산정비율 > 입·퇴소 내용신고/ 근무내용관리
- 화면용도 가족휴가제 이용자 입·퇴소 내용 입력 및 종사자 근무내용 등록



- 기본정보(급여계약통보)에 가족휴가제 가능여부 (Y, N) 확인
- 입·퇴소내역/신고화면에서 입·퇴소 사유 “가족휴가제” 선택
 - 입·퇴소시간 입력 ... 퇴소시간 24:00 고정
 - 퇴소일은 반드시 일반 “입퇴소”로 선택하여 입력
- 근무내용관리: 종사자 실제 근무시간 입력(야간시간 포함)

VI 청구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접속경로 기타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 화면용도 서비스 제공월별 이용현황을 조회, 확인하고 해당 내역을 청구



- 현행,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청구 방법 준용

제5장

시범사업 관련 서식

[서식1]

(앞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수급자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업무와 관련, 귀하의 시범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오니,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에 관한 동의】

정보 주체	성 명		생년월일		장기요양인정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기관기호		기 관 명			

- ① 시범사업 내용 : 가족의 출장·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24시간 돌봄 제공
- ② 시범사업 기간 : 2025.1.1. ~ 시범사업 종료일
- ③ 위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이용사유

- ☐ 보호자의 병원 입원치료 ☐ 주·야간보호기관의 권유 ☐ 보호자의 여행, 외출 ☐ 집수리, 이상 등 주거문제
- ☐ 요양시설 입소 전 적응 ☐ 집안경조사 ☐ 보호자의 휴식 ☐ 기타 ☐ 가족휴가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관련 업무 수행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격구분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 ④ 귀하는 본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 ①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 ②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필수항목) :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기관기호, 기관명, 본인 부담률, 서비스 이용 사유,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자립상태, 서비스제공내용), 건강사정 항목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 혈당, 질병명, 복용약, 신체사정 결과(위생, 신체기능, 질병관리, 인지기능, 영양관리, 배설관리)}**
- ③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10년**
- ④ 귀하는 본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신청인(수급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1-2]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신청 대리인				
위 임 장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 신청인(본인)은 아래의 대리인에게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3]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①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자격	전화번호	
② 계약 당사자	기관명		기관기호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전화번호(휴대 폰)		계 약 일 자		
	서비스개시일		계 약 기 간		
③ 필수 확인 사항	가족휴가제 계약 시에만 작성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반드시 확인)				
	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 가능자			Y / N	
	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5.1.1.~계약일 전일)			일	
	가족휴가제 계약일수 (퇴소일 제외)			일	
④ 서비스 계약 내용	서비스이용			서비스이용(변경)	
	기간	입/퇴소시간		기간	입/퇴소시간
	비고				
⑤ 비급여 계약 내용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또는 횟수)/월	금액
	합계		(원)		
	비고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가족휴가제) 서비스이용 및 비용 청구를 위하여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E-mail:

기관
의
장(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방법

① 수급자

-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자격,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계약당사자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습니다.
- 서비스개시일: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짜를 적습니다.
- 계약기간: 전체 계약기간(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③ 필수 확인사항

- 가족휴가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자: 1~2등급, 3~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가족휴가제(단기보호)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작성합니다.)
- 가족휴가제 연간 이용일수: '25.1.1.~ 계약일 전일까지의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를 적습니다.
(타 기관에서 이용한 가족휴가제(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 포함) 이용일수 합산)
- 가족휴가제 계약일수: 기관에서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일수를 작성합니다.

③ 서비스계약내용

- 서비스이용: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야간서비스를 작성합니다.
- 기간: 계약기간 중 입·퇴소기간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기간을 적습니다.
- 입소시간, 퇴소시간 : 입소일, 퇴소일의 주간서비스 이용시간을 포함한 실제 입·퇴소시간을 적습니다.
- 서비스이용(변경): 서비스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자별로 작성합니다.
- 비교란에 변경 전, 변경 후 내용을 작성합니다.

④ 비급여 계약내용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적습니다.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의 제공기간을 적습니다.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의 일일 단가를 적습니다.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작성)
- 개수, 일수 또는 횟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를 적습니다.
- 금액, 합계 : 항목별 총 금액과 총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변경: 비급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항목별 “(변경)”을 표시하여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된 사유 및 변경된 총 금액 등을 비교란에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1.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서식4] 삭제

[서식5]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

(앞쪽)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침실	
김 건 강	1940.01.01	3등급	L2123456789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 호			
00주야간보호센터		3-12345-67890			
수급자 상태	☐ 와상 ☐ 준와상 ☐ 자립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 ☐ 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셋길)				
	☐ 장루(창자셋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욕창방지 보조도구()				
참고사항					
(2025)년 월/일		1/1	1/2	1/3	
야 간 서 비 스 제 공 내 용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	☐	
	식사	종류	①일반식 ②죽 ③유동식(미음)	①일반식 ②죽 ③유동식(미음)	①일반식 ②죽 ③유동식(미음)
		섭취량	① 1 ② 1/2이상 ③ 1/2미만	① 1 ② 1/2이상 ③ 1/2미만	① 1 ② 1/2이상 ③ 1/2미만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회	회	회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이동도움	☐	☐	☐	
	혈압/체온	/	/	/	
	투약보조	☐	☐	☐	
	응급서비스				
특이사항					
수급자의 입·퇴소시간		08:00~24:00	00:00~24:00	00:00~18:00	
작성자1	성명	강 ○ ○ (서명)	강 ○ ○ (서명)	장 ○ ○ (서명)	
	서비스시작 /종료시간	18:00~24:00	00:00~08:00	00:00~08:00	
작성자2	성명	(서명)	장 ○ ○ (서명)	(서명)	
	서비스시작 /종료시간		18:00~24:00		

(뒤쪽)

구분	세부내용
수급자 상태	수급자의 와상도 및 주요 질환, 간호처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습관, 행동변화 등 참고사항 기록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 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식사도움	아침,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등
투약보조	평상시 복용하는 경구약 등 복용 확인, 복용 관찰 등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유의사항	

- 본 서식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서비스 중 야간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기록합니다.
(※ 주간서비스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급여)에 기록)
- 식사는 종류 및 섭취량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화장실 이용하기는 서비스제공시간 동안의 소변·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냉찜질함,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 수급자의 입·퇴소시간은 입소일의 서비스 시작시간과 퇴소일의 서비스 종료시간을 작성합니다.
- 야간서비스(22시~다음날 08시)를 제공한 날짜별로 종사자의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을 기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 후 작성자 란에 서명합니다.

[서식7]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변경]통보서

(앞쪽)

① 장기요양기관명			② 기관기호	
③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⑤ 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사업자등록번호				
▪ 기관기호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참여기관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시범사업 서비스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①・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③: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집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 ⑥: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기관은 통보한 시범사업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관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통보서와 제출서류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⑦: 통보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관기호**의 변경사항을 작성합니다.

[서식8]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신고서

(앞쪽)

장기요양 기관의 장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변경사항	[]이용 가능 인원 []침실현황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위와 같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시범사업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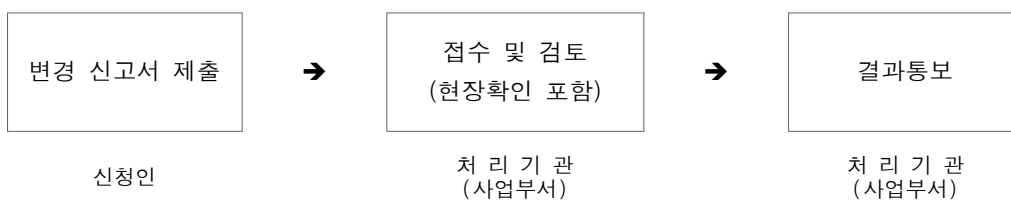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침실 및 화장실 위치 등의 사진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 표합니다.
-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청구횟수

- 야간운영비용: 해당 월에 야간서비스 운영횟수(일수)를 작성합니다.

② 청구금액

- 야간운영비용: 청구 당월의 야간운영비용 청구금액을 작성합니다.

※ 기존 운영지원금(1일당 10,000원) 5회 이상 지급 기준 삭제, 야간운영비용에 통합하여 지급

[서식 12] 삭제

[서식 13]

[년 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서

장 귀하 (페이지 : /)

기관기호		접수번호		심사결정일자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구분	지급결정액	총금액(A+B-C)			지급일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야간운영비용(A)																														
운영지원금(B)																														
야간운영비용 심사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심사내용 및 전달사항																														
합계	구 분		횟수		총 액		구 분		횟수		총 액																			
	야간운영비용	청구사항					야간운영비용	심사조정																						
		심사결정						심사불능																						
		운영지원금	심사결정	-				상계(C)																						

2023.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이 사 장

직인생략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앞쪽)

수급자명		생년월일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침실 호(실)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수급자 상태	☐ 와상 ☐ 준와상 ☐ 자립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기관지절개관 ☐ 튜니(부분/전체) ☐ 비위관(鼻胃管, L-tube) ☐ 고정소변배출관(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샛길) ☐ 장루(창자샛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욕창방지 보조도구()									
()년 월/일		/		/		/				
신체 활동 지원	세면, 구강청결, 머리 감기, 몸단장, 옷 갈 아입기 도움 등		☐		☐		☐			
	목욕		☐ ()		☐ ()		☐ ()			
	식사	종류	☐ 1 일반식 ☐ 2 죽 ☐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1 일반식 ☐ 2 죽 ☐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1 일반식 ☐ 2 죽 ☐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섭취량	☐ 1 1 ☐ 2 1/2이상 ☐ 3 1/2미만		☐ 1 1 ☐ 2 1/2이상 ☐ 3 1/2미만		☐ 1 1 ☐ 2 1/2이상 ☐ 3 1/2미만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화장실이용하기(기 저귀 교환)		회		회		회			
	이동도움 및 신체기 능유지·증진		☐		☐		☐			
	산책(외출) 동행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 산책 / ☐ 외출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인지 관리 및 의 사소 통	인지관리 지원		☐		☐		☐			
	의사소통도움 등 말벗, 격려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건강 및 간 호관 리	혈압/체온		/		/		/			
	건강관리 (분)		☐		☐		☐			
	간호관리 (분)		☐		☐		☐			
	기타(응급서비스)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기능 회복 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훈련		☐		☐		☐			
	인지기능향상훈련		☐		☐		☐			
	물리(작업)치료		☐		☐		☐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서명)		(서명)		(서명)			
수급자의 입·퇴소시간,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 활동지원		건강 및 간호관리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구강청결 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건강관리	관절오그라들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머리감기 도움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 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몸씻기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간호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셋길) 간호, 장루(창자셋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오그라들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 관리	
신체·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태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화상 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광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침구·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심킴 운동, 팔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기본동작 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았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시동작 등 훈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화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인지 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 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유의사항

-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 표를 합니다.
-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 이상무, 얼굴창백함, 오한있음 등
- 식사는 식사종류 및 섭취량 해당 사항에 √ 표를 합니다.
- 체위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 표를 합니다.
- 화장실 이용하기는 소변·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 산책, 외출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사항에 √ 표를 합니다.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합니다.
-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미온수로 닦아냄,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을 합니다.

제6장

시범사업 Q & A

주 ·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Q&A

□ 시설기준

Q1

프로그램실을 침실로 지정받았습니다. 오후 2시에 서비스 이용자가 발생하였는데, 연락을 받은 시간부터는 침실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A1

○ 아닙니다. 침실을 타 공간과 병용할 경우 주간서비스 운영 시간에는 지정·설치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실의 기능을 유지하고, 그 외 시간에는 야간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운영시간에 맞추어 주간에는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 주간서비스 종료 후 야간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가능합니다.

Q2

정원 35인이며 이용가능인원 2명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시설증축으로 침실규모가 확대되어 4인까지 이용가능한데 추가로 입소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

○ 가능합니다. 침실 규모 및 시설 환경 변화로 시범사업 이용 가능인원을 변경할 경우, 기관은 참여기관 시설현황 변경 신고서(서식8)를 작성 후 변경 전·후 평면도, 침실 등 사진 첨부하여 사업부서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서류 접수 및 검토하여 기관으로 이용 가능인원을 승인·통보합니다.

※ 수급자 1인당 6.6㎡, 침실 1실 정원 4인 이하 등

Q3	시범사업 이용 가능 인원이 4인이며, 4인실 1개를 시범사업 침실로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여성수급자 2인이 이용 중인데 남성수급자 1인을 입소시킬 수 있나요?
A3	○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침실의 경우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인실 1개를 시범사업 침실로 지정받은 경우 남, 여 혼숙은 불가능합니다. ※ 단, 수급자 부부인 경우에는 혼숙 가능

□ 인력기준

Q4	08시~18시 주간서비스만 제공하던 기관입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어 야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별도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A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관은 수급자 전원에 적용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기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표준급여제공시간(08시~22시) 외 야간서비스시간(22시~다음날08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야간서비스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추가 가입이 필요합니다.
Q5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야간서비스 제공 시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요양보호사를 공동 활용 할 수 있나요?
A5	○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운영기관은 야간서비스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일반실과 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를 야간근무 직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Q6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서비스 시간에 의무배치 요양보호사 1인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근무한 시간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A6	○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인력배치기준을 요양보호사 1인 의무 배치로 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51조의 근무인원수 산정을 위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또한 야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직종의 종사자가 근무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시범사업의 야간서비스제공을 돕기 위해 근무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Q7	요양보호사의 갑작스런 퇴사로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야간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야간 운영비용을 산정할 수 없나요?
A7	○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월에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지 않은 경우 야간서비스가 제공되어도 야간운영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를 추가배치하지 않았더라도 급여제공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주·야간서비스비용은 산정 가능합니다.

□ 서비스 계약

Q8	계약서 작성 시 5월 7일 입소예정이었으나, 수급자 사정으로 하루 늦게 입소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A8	○ 그렇습니다. 기관은 수급자와 시범사업 서비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계약 및 시범사업 서비스계약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Q9	A단기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6일 이용한 B수급자가 C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A9	○ 시범사업 서비스는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수(입·퇴소일 포함)와 합산하여 월 9일 이내(퇴소일 제외)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타 기관에서 단기보호급여를 6일(입·퇴소일 포함) 이용하였다면, 시범사업 서비스는 4일(퇴소일 제외)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0	시범사업은 단기보호급여와 다르게 이용일수에서 퇴소일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최대 며칠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A10	○ 일반 단기보호급여 제도는 입소일·퇴소일 모두 이용일수에 포함하는 반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9박1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예시 : 1박2일의 경우 1일 산정, 3박4일의 경우 3일 산정) <u>다만, 시범사업 이용월에는 연간 4회 연장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u>
Q11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도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11	○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등 가정방문급여 또는 노인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이용자도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수급자의 상태파악을 위하여 17시 이전에는 반드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입소하여야 합니다.

Q12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인데 가족휴가제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이 가능한가요?

A12

○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3~5등급 치매환자 및 인지지원등급일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기관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종일 방문요양 포함하여 **연간 11일 이내(입·퇴소일 포함)**만 가능합니다.

※ 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이용한 가족휴가제의 퇴소일은 이용일수에서 제외됩니다.

Q13

A단기보호기관에서 가족휴가제를 3일 이용한 B수급자가 C주·야간보호기관에서 가족휴가제 및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며칠이나 이용 가능한가요?

A13

○ 가족휴가제는 연간 11일 이내(입·퇴소일 포함)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휴가제는 남은 한 해 동안 최대 **8일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매월 9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Q14

저희 주·야간보호기관은 시범사업 1일 이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선정 받았는데 같은 날에 A, B 수급자는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고 C수급자는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14

○ 불가능합니다.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인원+가족휴가제 이용인원은 합산하기 때문에 최대 2명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날 서비스 제공 시 야간운영일은 1일만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Q15	야간근무 직원으로 2인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A15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2인 이상의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64,000원 산정됩니다.
Q16	기관 내 1층과 3층의 공간을 각각 시범사업 침실로 인정 받았습니다. 각 층별로 두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면 해당 인원에 대한 야간운영비용은 각각 지급이 가능한가요?
A16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64,000원 산정하여 요양보호사를 2인 이상 배치하더라도 1회만 지급됩니다. 또한, 사례처럼 2개 이상 층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명이 각 층을 모두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층별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Q17	수급자가 시범사업 종료일 00시~08시 야간서비스 이용 후 1시간(08시~09시) 외출하고 돌아와 주간서비스 이용, 15시 최종 퇴소하였습니다. 서비스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17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13시간 초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인 00시~08시의 8시간과 09시~15시의 6시간을 합산하여 13시간 초과 수가로 산정됩니다.

Q18

오전 09시 입소한 수급자가 건강상태 악화로 입소일 23시에 병원 입원하였습니다. 야간운영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A18

○ 수급자의 사정(병원입원, 사망, 서비스거부)으로 22시부터 다음날 08시 사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야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근무 인력을 기 배치하였으므로 야간운영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은 수급자에게 실제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시간까지 인정합니다.

Q19

수급자가 7월 13일 09시부터 15일 08시까지 가족휴가제를 이용 할 경우에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A19

○ 입소일-중간일은 수급자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가족휴가제' 1일당 수가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퇴소일은 등급에 따라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산정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구분	실제 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신고 (실제 청구시간)	서비스비용
입소일(7/13)	09:00 ~ 24:00	09: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중간일(7/14)	00:00 ~ 24:00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 이상
퇴소일(7/15)	00:00 ~ 08:00	00:00 ~ 08: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Q20

야간근무 직원으로 각각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1명씩을 배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야간운영비용을 2명 모두 산정할 수 있나요?

A20

○ 아닙니다. 야간운영비용은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치한 야간근무 직원 1인에 대한 비용으로 기관1일당 1회 산정합니다. 따라서 22시~다음날08시까지 같은 날 각각 서비스에 1인씩 종사자를 배치하였더라도 야간운영비용은 기관 1일당 1회 64,000원 산정됩니다.

Q21

2025년 2월 수급자가 3~4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5~6일은 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7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21

○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3~4일(주·야간보호), 5~6일(가족휴가제), 7일(주·야간보호)로 계약 등록을 해주시고 청구도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구분	급여종류	실제 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청구시간)	급여비용 산정 수가
2월 3일	주·야간보호	08:00 ~ 24:00	13시간 초과 + 야간가산
2월 4일	주·야간보호	00:00 ~ 24:00	13시간 초과 + 야간가산
2월 5일	가족휴가제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2월 6일	가족휴가제	00:00 ~ 24:00	가족휴가_12시간이상
2월 7일	주·야간보호	00:00 ~ 08: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자세한 계약등록 및 청구 방법은 매뉴얼 준용

Q22

3등급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은 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A22

○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면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가족휴가제 2일을 제외한 월 13회 이용한 것으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단, 단기보호 시범사업 가족휴가제 퇴소일(이용일수 제외) 포함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5회(1일 8시간 이상)가 될 경우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가능합니다.

□ 청구

Q23

시험사업 이용일의 주·야간서비스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용자가 5월 2일 09시에 입소하여 5월 4일 18시에 퇴소한 경우, 주·야간서비스 청구시간을 어떻게 입력하여야 하나요?

A23

- 주·야간보호급여와 시험사업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급여 청구시간은 야간서비스 시간을 포함한 실제 서비스 시간이 입력되고, 특정내용등록에 숙박제공 사유는 반드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숙박제공”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13시간 초과 수가에 대한 사유 등록 시 「단기보호 시험사업 이용」으로 입력

< 청구 내용 >

구분	실제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신고 (실제 청구시간)
입소일	09:00 ~ 24:00	09:00 ~ 24:00
중간일	00:00 ~ 24:00	00:00 ~ 24:00
퇴소일	00:00 ~ 18:00	00:00 ~ 18:00

Q24

가족휴가제를 이용한 날에는 목욕가산 청구가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가요?

A24

- 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에서 이용하는 가족휴가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시 제36조2항에 따라 가족휴가제 수가에 목욕서비스 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욕서비스가산을 추가로 받을 경우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목욕서비스가산은 불가능합니다.

Q25 가족휴가제를 이용했을 때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A25 ○ 고시 제36조의2 1항에 따라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 미포함 금액이므로 가족휴가제 이용일수는 주·야간보호 이용일수*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한도액 추가산정 할 수 있는 이용일수에 미포함 됩니다. ... *고시 제3장 제1절 제13조 제7항 및 8항

Q26 가족휴가제를 이용했을 때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A26 ○ 네. 포함이 됩니다. 월별 입소자 수는 해당 월의 각 일자별 주·야간보호 이용자(시범사업 이용자 포함)의 합계를 해당 월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월 이용자수를 구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록지

Q27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어떻게 작성하나요?

A27 ○ 서비스 제공기록지는 2022년까지 각각의 서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23년도부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별지 제 15호)에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사항에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 또는 가족휴가제 제공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 (주간) 08~22시, (야간) 22시~익일 08시

Q28

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A28

○ 주·야간보호기관을 계속 이용한 수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욕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 또는 외부 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II > 주·야간보호 28 > 수급자 욕구평가

□ 야간서비스 종사자 근무시간 산정 및 등록

Q29

단기보호를 제공한 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29

○ 단기보호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월기준근무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기준근무시간) ③항에 따라 말일(31일 등)에서 익월 1일 00:00~08:00로 이어서 근무할 경우 1일의 근무시간(00:00~08:00)은 전월 근무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근무자 근무시간이 4월 30일 18:00 ~ 5월 1일 08:00일 경우, 5월 1일의 00:00~08:00는 4월 근무시간으로 산정됨.

Q30

야간서비스 시간에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30

○ 야간서비스 시간에 근무한 종사자도 주간서비스 시간에 근무한 종사자와 동일하게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근무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Q31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제공한 근무자의 근무시간 입력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31

- 1. ①에서 **☑익일근무** 체크 후 근무시작 시간과 익일 근무 종료시간을 입력
- 2. 주간휴식(제외시간), 야간휴식(제외시간)을 입력
※ 고시 기준 야간시간: 22:00 ~ 06:00
- 3. 근무입력 사항을 ② 해당일에 클릭
※ 근무내용은 평일 포함하여 **☑익일근무** 기능을 필히 사용

The screenshot shows the NHI system interface for entering work hours. A red box labeled '1' highlights the '익일근무' (Next Day Work) checkbox and the '근무시작' (Work Start) and '근무종료' (Work End) time fields. Another red box labeled '2' highlights the '근무내용' (Work Content) table, which shows a calendar grid for the month of January 2025. The table has columns for days of the week and rows for dates. A tooltip is visible over the 9th of January, showing work hours: 08:00-18:00 (10:00-12:00) and 18:00-06:00 (06:00-08:00).

□ 시범사업 서비스비용 산정기준 외 청구

Q32

야간운영비용 심사지급통보 시 이동서비스비 착오 청구건이 있다며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2

○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청구·지급내역 중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일에 이동서비스 왕복 또는 편도 청구하여 지급된 경우 급여비용 환수 대상 건으로 기관에서 관할 운영센터로 자진 신고하여 환수 처리 요청합니다. 시범사업 서비스 입·퇴소 일에는 이동서비스비 편도 청구만 가능하며, 중간일에는 이동서비스비 청구가 불가합니다.

※ 개인급여내역 자료구축으로 지급 월의 익월 중순이후 자진신고 가능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여부

Q33

5등급인 A수급자가 가족휴가제를 이용하기 위해 1일에 입소하여 3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퇴소일은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진행되는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나요?

A33

○ 네, 맞습니다. 고시 제30조6항에 따라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소일 서비스 종료가 00:00~08:00로 이루어지는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예시 >

구분	실제서비스제공시간	입·퇴소내용 신고 (실제 청구시간)	구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입소일	09:00 ~ 24:00	09:00 ~ 24:00	가족휴가제	X
중간일	00:00 ~ 24:00	00:00 ~ 24:00	가족휴가제	X
퇴소일	00:00 ~ 08:00	00:00 ~ 08:00	주·야간보호	X

※(퇴소일) 서비스 종료시간이 08시 이후 인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필수